

## ■ 일반/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서류(계약체결 전 제출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	필수	추가				
공통서류 (일반/특별공급)	○		신청자격별 구비서류	본인	·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	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용(본인 발급용) 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체결 불가	
	○	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	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○		주민등록표 등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이름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	
		○	배우자 주민등록등본 (상세)	배우자	·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	
	○	추가 개별통지 서류	본인	·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(개별통지)		
특별 공급	공통서류 (청년 및 신혼부부)	○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	
		○	비사업자확인각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임대공급홍보관 비치	
		○	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 (청년은 혼인 중이 아닌 경우만 청약 가능하므로 배우자 미해당)	·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·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질병코드번호, 출산 예정일,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 · 출산이행각서(임대공급홍보관 비치)	
	청년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·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, "상세"로 발급	
		○	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	
		○	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	직계존속 (부모)	·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	
	신혼 부부	혼인 상태인 경우	○	혼인 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· 혼인신고일 확인, "상세"로 발급
			○	소득 관련 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	혼인 예정인 경우	○	결혼 확인서류	본인	· 서약서(임대공급홍보관 비치)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
			○	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(상세)	예비배우자	· 이름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 "상세"발급
○			소득 관련 서류	본인, 예비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	
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(배우자 포함)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-청약자기준		
	○	위임장	-	· 임대공급홍보관비치,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		
	○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	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(2022.10.14.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용도란은 공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(아파트 임대계약용)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"주민등록번호" 뒷자리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# ■ 특별공급(청년, 신혼부부) 당첨자 소득증빙 제출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'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②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- 해당 직장 -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함.	①②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-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-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-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	- 국민연금공단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- 국민연금공단 -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	- 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직인날인)	- 세무서 -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-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- 해당직장 - 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원(소득세 신고사실 없는 경우)	- 접수장소 비치 - 주민센터	
자산입증서류	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「부동산등기법」제109조의2 및 「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"부동산 소유 현황"(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),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(*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 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회원가입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		

※ 상기 재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
※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(예시 :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)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※ 해당직장,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※ 소득증빙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